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서

차 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고)(신설, '24.3.14)

제2장 종합박람회

제5조(수요조사)

제6조(통합한국관 임차)

제7조(통합한국관 운영)

제8조(홍보관 등 설치운영)

제9조(부스배정)

제10조(자부담 참가)

제11조(박람회참가 준비활동)

제3장 개별박람회

제12조(참가대상)

제13조(선정규모)

제14조(참가업체 준수사항)

제4장 신청 및 선정

제15조(참가신청)

제16조(심사 및 선정)

제17조(선정한도)

제18조(참가부담금 납부)

제19조(추가선정)

제5장 박람회 참가지원 및 정산

제20조(지원항목)

제21조(지원제외 항목)

제22조(지원금 한도)

제23조(지원금 정산)

제6장 성과관리

제24조(사업평가)

제25조(현장점검)

제26조(포상)

제27조(사업 제재)

제28조(참가포기 면책사항)

제7장 보칙

제29조(기타)

부칙

별표

별표 1.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별표 2.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

별표 3.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업체 선정평가기준

별표 4. 박람회 참가업체 청렴서약서

별표 5. aT [국외여행 정액표\(신설, '24.3.14\)](#)

별표 6. 개별박람회 세부참가계획(일반)

별표 7. 개별박람회 세부참가계획(단체)

별표 8. 개별박람회 결과보고서(일반)

별표 9. 개별박람회 결과보고서(단체)

별표 10. 박람회 표준상담(세일즈 리드) 양식

별표 11. 국제식품박람회지원사업 성과평가 조사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

[시행 : 2024.1.1.] [2024.03.14 (전부개정)]

제 정 2013.10.24

제1차전부개정 2023.11.10.

제2차전부개정 2024.03.14.

글로벌사업처(푸드페어사업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적용할 일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라 한다)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이하 “박람회사업” 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수출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람회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 참가하거나, 개별업체가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한국관”은 개최 시기, 지역 및 박람회명이 동일한 박람회에서 다수의 개별업체 또는 단체관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스 중복 설치에 따른 비효율을 예방하고 통일된 국가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통합된 형태의 한국관을 말한다.
3. “종합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개별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업체 또는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참여기관”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을 통해 참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협회·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6. “참가업체”는 aT를 통해 종합박람회 또는 개별박람회의 참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참여기관에서 aT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에 참가를 위하여 별도로 선정한 업체 및 별도신청을 통해 자부담으로 참가하는 업체를 말한다.
7. “온라인박람회”는 전시주최사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를 말한다.
8. “참가부담금”은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업체에게 부스 임차·장치, 운송 등 박람회 소요비용에 대해 일정부분의 수익자 부담 형태로 부과되는 자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공고) ① aT는 박람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류, 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박람회사업 모집공고”를 aT국제식품박람회 사이트(global.at.or.kr:8081, 이하 “박람회 사이트”라 한다), 일간지 등에

공고한다.

② 공고는 연 2회를 기본으로 하며, 예산·정책 방향의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거나 추가 지원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장 종합박람회

제5조(수요조사) ① aT는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에 참가하였거나 참가계획이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협회·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참가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aT는 제1항의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 임차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통합한국관임차) ① aT는 차년도 박람회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당박람회의 면적 임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람회 주최사의 국내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본사에서 임차계약을 추진하고 국내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 관할 aT 해외지사에서 임차계약을 추진하되, 추진 완료 후 본사에 임차계약을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박람회 부스확보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권역별 주요 대표 박람회로써 지속적인 참가를 통한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한 경우
2. 박람회 특성상 사업계획 수립 전 임차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
3. 기타 정부 정책 필요에 따라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통합한국관 운영) ① aT가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외박람회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가 참가할 경우 통합 국가브랜드 홍보효과 증진, 참가업체 및 바이어 혼란 방지, 개별참가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집행 방지 등을 위하여 aT가 총괄 주관하는 단일 통합한국관을 통해 참여토록 운영한다.

② 통합한국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협회·단체·법인 등이 포함된다.

③ 통합한국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하 참여기관)은 aT의 연간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참가 대상 박람회를 결정하고 참가희망 부스 수를 사전에 aT와 협의 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토록 한다.

1. aT는 각 박람회 주최 측과 협의하여 참여기관의 통합한국관 참여수요에 대한 공급가능 부스 수량을 **확정하여** 각 참여기관에 회신한다.
2. 참여기관에서는 aT로부터 부스 수량 배정을 통보받은 후 **변경(참가 포기, 참가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경우 aT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3. 참여기관은 부스 수량 배정 통보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발생한 변경(참가 포기, 참가 규모 축소 등)에 대해서는 분담금(임차비, 장치비, 보험료, 업체 등록비 등)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T는 향후 2회 동안 해당 기관의 박람회 사업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참여기관에서는 부스 수량 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배정통보 받은 부스 수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가업체를 선정한 뒤 aT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부스 위치는 동일 블록 내지 인접한 블록에 모든 참여기관 부스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급 가능한 부스 수량이 부족할 경우, aT 부스와 인접하지 못한 위치로 배정할 수 있다.
6. 장치디자인은 aT가 지정한 장치업체가 시공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시 참여기관이 별도로 추가적인 장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7. 박람회별 통합한국관 모든 참가업체의 정보가 담긴 디렉토리는 aT에서 aT 수출홍보사이트

(www.k-foodtrade.or.kr)상에 온라인으로 구현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통합한국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업체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참여기관은 통합한국관 부스임차비 및 장치공사비에서 해당 배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액이 확정되면 통보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관 등 설치운영) ① aT는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식품박람회에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통합한국관에 농식품 홍보 부스, 컨설팅 부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aT 수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한국관에 수출지원사업의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관 등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부스배정) ① 통합한국관 내 부스배정은 1개 참가업체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4부스(36㎡)까지 배정할 수 있다.

- 1. 미개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 2.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가업체의 부스위치 배정은 참가업체가 직접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을 통한 추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천 시 aT에서 지정한 사람이 추천을 진행하고 그 추천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참가업체가 부스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스위치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 1. 참가기업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
- 2. aT 박람회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포부스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홍보관 부스의 경우
- 3.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개별업체 참가를 위해 다수의 부스를 배정받은 경우
- 4. 기타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자부담 참가) ① aT는 통합한국관 참가업체 모집과 별도로 자부담 참가 요청이 있는 경우 주최사로부터 추가 면적 임차가 가능한 박람회에 대해 추가확보 면적 이내에서 협회·단체·법인 등의 자부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자부담 참가 신청은 최대 2부스 이내로 가능하나, 주최사로부터 자부담 참가를 위한 추가면적 임차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1부스만 배정하거나 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

③ 자부담 참가업체는 농식품 이외의 제품을 홍보할 수 없으며, 비용 부담을 제외한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책임 및 의무는 aT가 지원하는 참가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자부담 참가업체는 중복 수령 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⑤ 자부담 금액은 통합한국관 참가업체 부스임차비 및 장치공사비에서 배정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자부담 참가업체는 자부담 금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27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1조(박람회참가 준비활동) ① aT는 박람회를 통한 참가업체 성과제고를 위해 박람회 사전 준비 및 준수사항 안내, 홍보·마케팅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aT는 박람회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전설명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으로 사전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사전설명회는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 출장예정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참가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 귀책 사유로 불참한 경우 부스위치 추천은 aT에 위임한다.

⑤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 등 모든 박람회 현장 출장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박람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 aT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aT는 설명회에 참석하는 참가업체에 참가신청 등록서류 일체를 지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 출장자는 관련 서류 일체를 설명회 담당 aT 주관부서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박람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개선 및 의견 청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관, 업체 등과 업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전시 주최사 에이전트, 장치사, 여행사, 운송사 등 박람회 관련 업체

2. aT 박람회 업무 유경험자 및 해외지사 파견근무 유경험자

3.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유관기관 등 박람회 업무 연관 업체

⑧ 박람회 운영은 참가업체의 직접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으로 박람회 개최지 출입국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지 파트너사 참가, 대행인력(MD)을 활용한 참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행인력(MD)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부스 운영인력이 없는 경우 불참으로 간주하고, 제27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장 개별박람회

제12조(참가대상) 개별박람회는 aT 주관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제식품박람회를 제외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선정규모)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의 박람회 참가 취소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모집규모를 초과하여 참가업체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참가업체 준수사항) ①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부스 임차, 장치, 비품, 전시품 운송, 홍보 및 판촉물 준비 등 박람회 부스운영과 전시 상담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박람회 개최 여부, 신청 기간 등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박람회 참가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박람회 참가 신청 및 박람회 부스 간판 등은 반드시 선정 업체명 또는 해당업체 대표 브랜드(제품)명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타 업체명 또는 타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선정업체명이 아닌 대표 브랜드 또는 제품명으로 부스 참가 및 디렉토리 등재 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상표등록증, 상표사용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③ 박람회 운영은 참가업체의 직접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으로 박람회 개최지 출입국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지 파트너사 참가, 대행인력(MD)을 활용한 참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행인력(MD)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부스 운영인력이 없는 경우 불참으로 간주하고, 제27조제4항을 적용한다.

④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사전설명회 이후 한 달 이내에 붙임 양식에 따라 참가대상박람회『세부 참가계획(별표 6, 7)』과 『부스임차계약서』 및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별표 2)』를 aT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7조제6항제

1호를 적용한다. 단, 주최측의 사정으로 해당 기일까지 부스임차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a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별박람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박람회 취소 등의 주최측 사정이나 불가항력적 사항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최대 1회까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부스 마감 등 참가업체의 과실 또는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변경 요청은 승인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불참으로 간주하여 제27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박람회 변경요인 발생 시 즉시 개별박람회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aT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박람회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 후 한 달 이내 또는 박람회 개최 전 한 달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제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청 및 선정

제15조(참가신청) ① 박람회에 참가지원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회원가입 후 동 시스템의 수출지원사업신청의 국제식품박람회신청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 공고기간 이내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1. 박람회 참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1부(별표 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실제 전시할 제품별 샘플 포장 사진과 제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라벨링 사진 합본 1부
6. 각종 국내 인증서 및 해외 인증서 사본 각 1부
7. 제품 홍보물(영어, 현지어 또는 한국어) 사본
8. 출전 품목 상세서 1부
9. 사업자명의로(또는 대표자가 병기된) 통장 사본 1부

② 참가업체는 박람회 모집공고 기간 종료 전에는 참가신청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단, 모집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③ 참가업체는 박람회사업을 통한 수출실적 조화에 필요한 무역통계제공 동의를 위해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http://www.trass.or.kr/at.jsp>)을 통해 무역통계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aT는 박람회 참가신청 시 aT 수출홍보사이트 (www.k-foodtrade.or.kr)에 박람회 출전 상품 등록 및 갱신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평가 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위해 추가적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참가업체는 aT가 위 제1항 각 호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aT는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사업 제재를 할 수 있다.

⑥ 원활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주최사 에이전트, 장치공사업체 등 박람회 관련 업체에 참가업체의 기업 정보, 연락처 등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심사 및 선정) ① aT는 다양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의 박람회 참가를 위해 품목별로 부류를 구분하며, 국가별 유망품목, 시장동향 등에 따라 부류별 선정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와 가감점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부류별 선정한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계량·비계량 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해당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 등 농식품 수출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며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신선농산물 등 농가소득 연계 부류와 박람회 개최국가의 통관 및 현지시장여건·정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해 박람회 참가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한다.

⑤ 신청업체 중에서 박람회 참가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증서 내 업체명과 발급일자 또는 유효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장 최근에 발급 또는 갱신 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한이 해당 박람회 종료일까지 유효하여야함
2. 제조업체는 자체 취득한 모든 인증서가 유효하나, 유통업체의 경우 1개 제조업체와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에 관한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함

⑥ aT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일부 계량평가 업무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선정한도) ① 종합박람회와 개별박람회의 선정한도는 별도로 운영한다.

② 종합박람회는 참가업체 당 상·하반기 각 최대 2회, 연간 최대 4회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 참여기관에서 선정하는 횟수는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박람회는 참가업체 당 상·하반기 각 최대 2회, 연간 최대 4회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협·단체 등 개별박람회 단체참가 기관에서 선정하는 횟수는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참가부담금 납부) ① 종합박람회에 최종 선정될 경우 참가업체는 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가부담금은 공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박람회 1회 참가 시 책정된 참가부담금을 반드시 신청 참가업체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서 지정하는 일시를 경과하여 입금하거나, 지정 일시까지 공사 지정 계좌에 참가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참가업체는 박람회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지정 일시를 경과하여 입금한 참가부담금은 해당 업체에 반환한다.

③ 참가부담금 납부 이후 참가를 포기하거나 박람회에 자의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참가부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으로 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박람회 선정업체에 참가부담금을 반환한다.

제19조(추가선정) ① 종합박람회 선정업체의 참가 포기 또는 임차면적의 증감 등의 사유로 해당 박람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최국가의 통관 및 현지시장여건·정부 정책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참가 포기 업체와 동일한 부류의 차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부류 차순위 업체가 없거나 임차면적의 증감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aT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업체가 참가부담금 납부를 불이행하여 해당 박람회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조 제1항에 따른다.

제5장 박람회 참가지원 및 정산

제20조(지원항목) ① 종합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쇼케이스, 상담테이블 등 기본비품을 포함한 통합한국관 내 1부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샘플 전시를 위한 농식품 운송통관 관련 비용

가. 사전 운송통관비 : 참가기업 전시품 편도 운송비(국내입고지→전시장 부스 앞)

나. 사후 운송통관비 : 참가기업 전시품 편도 운송비(참가업체→박람회 현장 상담 바이어)

2. 채소, 과수, 버섯 등 건조, 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1차 수확물로 박람회의 샘플 전시를 위해 냉장 유통이 필요한 신선농산물의 냉장비품 임차(24h 전기포함) 관련 비용
 3. 냉동 유통이 필요한 제품의 냉동비품 임차(24h 전기포함) 관련 비용
 4. 기타 박람회 참가를 통한 한국산 농식품 수출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②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1. 박람회 부스 임차비
 2.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상담테이블, 의자, 전기 등 장치비
 3. 카탈로그 스탠드, 냉온수기, 전자레인지 등 비품 임차비
 4.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샘플 전시를 위한 농식품 운송통관 관련 비용(국내입고지→전시장 부스 앞)
 5. 채소, 과수, 버섯 등 건조, 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1차 수확물로 박람회의 샘플 전시를 위해 냉장 유통이 필요한 신선농산물의 냉장비품 임차(24h 전기포함) 관련 비용
 6. 냉동 유통이 필요한 제품의 냉동비품 임차(24h 전기포함) 관련 비용
 7. 박람회 참가성과 제고를 위해 주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마케팅 서비스 경비 등에 대한 비용
 8. 온라인 참가등록비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에 대한 비용
 9. 보험료(안전, 상해 등)/ 20만원 이내
단,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하며 여행자 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10.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 1일당)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11. 기타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③ 지원항목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1조(지원제외 항목)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비용은 지원항목에서 제외한다.

1. 은행, 카드사를 통해 송금·결제·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2.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 수수료
 3. 카탈로그, 현수막 등 장기적,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홍보물품 구매 또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전시 샘플의 핸드캐리 운송비용
 5.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단, 세무관서의 사후 환급 불가 인정 시 예외
 6. 부스 운영을 위한 참가업체 담당자의 출장 관련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비
- 단, 개별박람회(단체)의 경우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단체 담당자(1인)에 한해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 항공료 : 국내 주요 도시(인천, 부산 등)와 박람회 개최 도시 간 이코노미 왕복 항공료 실비 (해외 환승을 위한 경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레이오버만 인정, 국내이동 항공료는 제외)
나. 숙박비 : 별표 5를 참고하되, 숙박비 결제일 기준 하나은행 최고고시 현찰 살 때 환율을 적용
- ② 지원제외 항목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2조(지원금 한도) ① 종합박람회 선정업체는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운송통관 및 냉장·냉동비품 임차관련 비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전운송 : 350만원(신선농산물), 150만원(가공식품)
 2. 사후샘플 : 100만원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동일)
- ② 개별박람회 선정업체는 박람회 참가 1회 당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 시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 : 600만원 한도 이내 집행금액의 90% 지원
 2. 단체 : 미주·유럽 1억원원 한도 이내, 그 외 국가 7천만원 한도 이내 집행금액의 90% 지원 및

- 협·단체 담당자(1인) 항공료, 숙박비
- 단, 최대 한도는 10개사 참가 기준이며, 항공료 및 숙박비는 aT 여비규정을 따른다.

제23조(지원금 정산) ① 모든 지원금은 참가업체가 먼저 지출하고 박람회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정산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종합박람회 : 지원금 신청 공문,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CI/PL 등 운송통관 관련 서류
 2. 개별박람회 : 결과보고서, 주최사 참가확인서 또는 디렉토리, 인보이스, 카드전표 등 지출 관련 서류
- ② 외화 송금에 따른 환율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송금 환율로 하며,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송금일 기준 최초 고시 '송금 보낼 때' 또는 현금 결제 시 '현찰 살 때' 환율을 적용한다. 단, 분할 송금한 경우에는 각각 송금한 원화 금액의 합을 각각 송금한 외화금액의 합으로 나누어 환율을 산출, 적용할 수 있다.
- ③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27조 제4항제3호에 의한 사업 제재를 할 수 있다.
- ④ aT에서 승인한 지원금은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통장사본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액을 입금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회사명이 병기된 계좌)로 입금한다.
- ⑤ 총 지원금액은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⑥ 지원금 정산 시, 관련 구비서류 불충분 업체, 박람회 참가규정 불이행 등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성과관리

제24조(사업평가) ① aT는 박람회사업을 통한 수출촉진 등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는 제1항의 사업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aT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사업평가 항목은 상담 및 현장계약·MOU실적 등의 계량실적과 부스 운영 및 상담일지 작성 충실성 등 비계량실적을 포함하며 세부평가항목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현장점검) ① aT는 박람회 참가업체의 전시상담 점검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aT 점검직원의 현지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aT 점검 직원의 현지점검 중 중도철회 및 지각, 개장시간 미준수, 타사 제품 전시, 비식품 전시, 불성실한 상담·부스 운영, 업체간 불화 야기 등 사례가 확인될 경우 aT 직원은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박람회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aT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농식품 수출촉진에 있어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② 정부정책 및 박람회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후성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사업평가 결과 우수 참가업체는 차기 박람회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사업 제재) ① aT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가기관 또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즉시 당해연도 잔여 박람회 취소 및 향후 3년간 박람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동일 박람회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3.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허위 보고한 경우
 4.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 ③ aT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1년간 박람회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aT 운영요원에게 소정 양식의 상담일지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2. 박람회 현장에서 불성실한 부스 운영 및 aT 운영요원의 정당한 현장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련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
 4. 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부담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박람회 주최, 장치 등 박람회 관련 업체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비용납부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전시품 운송에 협조하지 않는 등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 ④ 박람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가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 잔여 박람회 참가 취소 및 차기 박람회에서 선정 제외한다.
1. 사전설명회 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2. 박람회에 노쇼(No show) 하는 경우
 3. 원본 제출이 요구된 서류에 대해 원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또는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 ⑤ aT는 다수 업체의 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동일한 박람회에 동일한 참여 업체가 5년간 연속 참가할 경우, 그 차년도 동일박람회에 대하여 참가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5년간 연속 참가 시 지원 제한의 적용은 2019년 종합박람회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aT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박람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전 설명회 개최 한 달 경과 후에도 참가계획이 미확정 상태, 즉『세부참가계획』과『부스임차계약서』를 미제출한 경우
 2. 박람회 종료일 또는 선정발표 이후 aT에서 지정한 정산 요청일 기준 4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증빙서류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3. 예산집행 등 사업 진행 확인과 관련하여 aT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박람회 변경요인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박람회 변경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참가포기 면책사항) ① aT를 통해 선정된 박람회 참가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포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면책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사항(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
 2. 참가업체 자책 사항이 아닌 검역상 금지 또는 전시품 통관이 불가한 경우
 3. 박람회 주최사의 박람회 일정 변경으로 해당 참가업체 참석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 참가업체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aT에 참가 포기 면책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 ③ aT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 집행된 참가비, 운반보관료 등 지원 항목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참가기업 부담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기타) 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aT가 별도로 제시하는 조치에 따른다.

② aT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업체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부칙 (2023. 11. 10)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상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3. 14)

이 지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하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당사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공사 주관으로 참가하는 박람회에 참가 시 아래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당사는 박람회 출장 기간 중 박람회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신변 안전을 위하여 현지법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박람회 출장인력은 원활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귀 공사 운영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3.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지며,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권리를 침해한 참가사는 차년도 박람회에 선정 배제된다.
4. 당사는 하기와 같은 귀책 사유로 한국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시, 박람회 참가 제한 조치 등 귀 공사의 조치를 수용한다.
 - 1)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및 안내 없이 동 박람회에 불참한 경우
 - 2) 박람회 지원항목 외 별도 요청사항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주최사, 장치업체 등 관련 기관의 대금 청구요청에 미납한 경우
 - 3)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직매를 한 경우
 - 4) 임의로 배정부스를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 5) 귀 공사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귀중

[별 표 2]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

당사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별박람회에 참가 시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 식품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개별박람회 업체 지원은 농식품에 한해 지원(정산)이 가능하므로 수산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수산식품: 김, 굴, 전복 등 원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김스낵, 소스류 등)
2. 모든 지출 증빙자료는 선정업체 명의로 지출(송금)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 현지 법인 또는 국내외 협력업체 등의 대납은 불허하며 대납시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3. 박람회 참가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 신청 및 박람회 부스 간판은 반드시 선정 업체명 또는 해당업체 대표 브랜드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대표 브랜드의 경우, 업체의 대표 브랜드라는 것이 입증 가능 해야 함
4. 비품, 장치 등을 대여했을 경우, 결과보고서 사진 증빙 시, 확인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진 증빙 시 중복된 사진 첨부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전설명회 이후 1개월 이내에 참가계획서와 부스임차계약서(부스 인보이스 대체 가능), 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박람회 참가 후 1개월 이내에 aT 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개별박람회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박람회 취소 등의 주최측 사정이나 불가항력적 사항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반기별 최대 1회까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박람회 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 표 3]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업체 선정 평가기준(개정 '24.3.14.)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량 (60)	수출 시장 개척 의지	㉠ 수출상품 등록여부	10	등록(수정)10 / 미등록 0
		㉡ 수출실적 - 직전 3년간 평균 수출액×가중치	20	구간 점수 (20점) 500만불 이상 (15점) 100~500만불 미만 (10점) 10~100만불 미만 (5점) 10만불 미만 가중치 (3개년) 1.0 (2개년) 0.8 (1개년) 0.6 (0개년) 0
		㉢ 매출액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10	구간 점수 (10점) 50억원 이상 (8점) 30~50억원 미만 (6점) 10~30억원 미만 (4점) 10억원 미만
	기업 경쟁력	㉣ 인증서 - (국내) ISO, HACCP, GAP, GMP, 전통식품품질인증, 명인, 유기농식품,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KS, 지리적 표시, 유기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한국할랄, 농업벤처 - (해외) 미FDA, FSSC22000, HALAL(JAKIM, MUI, MUIS, IFANCA 등), 러시아GOST, 러시아CU, VEGAN, KOSHER, SQF2000, 중국보건식품, Global-GAP, 일본JAS, 미USDA Organic 등 해외유기농인증	15	인증서 1개당 5점 (최대 15점) * 유통사(벤더)는 1개 이상 제품에 대해 제조원명 표기와 관련 증빙(계약서, 구매확인서, 품목 제조보고서 등)을 업로드해야 함 * 인증서는 최대3개까지 입력 가능
	수출 준비도	㉤ 제품 카탈로그(외국어) - 업체별 제품 설명 카탈로그 보유 여부	5	(5점) 현지어 (3점) 영 어 (1점) 미보유
비계량 (40)	시장 진출 여건	㉦ 신청품목 시장적합도 - 해당관할 aT해외지사 평가	5	비계량 평가
		㉧ 신청업체 수출역량 - 소재지 국내지역본부 평가	5	비계량 평가
		㉨ 종합평가(선정위원회 평가) - 마케팅활동 계획 및 기타 종합평가	30	비계량 평가
합 계			100	
가감점	가점	㉠ 신규 참가업체	5	직전 3개년 미선정업체
		㉡ 정부정책 우대 - 일자리창출기업인증(고용노동부 선정)	5	청년친화강소/일자리옴통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5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경영혁신 인증기업	5	메인비즈 또는 이노비즈 인증
		- 청년농업인	5	대표자 만40세 미만 수출업체
		㉢ 사업성과 제고 - 사후 모니터링 피드백 완료	5	당해연도 사후모니터링 응답업체
		- 수출지원사업 연계	5	당해연도 수출상품화사업 2단계
	패널티	참가업체 중도 참가포기 - 사전설명회 후 포기 시	-	당해년도 잔여 박람회 취소 및 차년도 박람회 선정 제외
		박람회 노쇼(No Show) 및 불성실 업체	-	

- * ㉠ K-foodtrade.or.kr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경우 인정(기등록 업체는 공고기간 내 최신화 필수)
- * ㉡ 수출액은 무역정보제공 동의업체로 조회되는 실적만 반영하며, 최근 3개년(2021~2023년) 수출액 평균은 수출실적이 있는 연도로 제한 (예시) 2021년 20만불, 2022년 80만불, 2023년 0불 수출 시 수출액 평균 50만불로 구간 점수 10점에 2개년 가중치 0.8 적용하여 8점 획득
- * ㉢ 매출액은 나이스신용정보 조회 실적 반영(업체 직접 제출실적 불인정)하며 매출액 조회가능한 연도로 제한
- * ㉣ 모든 인증서는 최신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결과발표일 이후인 건에 한해 인정. 유통사는 1개 제조기업이 보유한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
- * ㉦, ㉧ aT해외지사 미관할지의 경우 선정위원회가 비계량 총괄 평가
- * ㉠, ㉡, ㉢ 가점 적용은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윤리경영을 위한 우리의 신조 -

우리는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구현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이 우선이다’라는 신념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올바른 근무자세를 견지하여 모범적인 수출인의 표상이 된다.

하나. 우리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과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한다.

하나. 국제연합(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별 표 5] aT 국외여행 정액표(신설 '24.3.14.)

1. 일당체재비 및 항공임

(단위 : 미합중국달러)

구 분		(1, 2급)	(3급 이하)
"가" 지역	숙 박 비	223	176
"나" 지역	숙 박 비	160	137
항 공 료		ECONOMY CLASS	

주) 1. 항공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교통약자(임산부 직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사장이 인정한 경우)의 경우 BUSINESS CLASS를 실비로 이용할 수 있다.

2. 지역구분

구 분	국가 또는 도시
"가" 지역	도쿄, 홍콩, 베이징, 싱가포르, 시드니,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런던, 파리, 오슬로, 제네바, 취리히, 베른,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두바이
"나" 지역	"가"지역 이외

[별 표 6] 개별박람회 세부참가계획(일반)

개별참가박람회 세부참가계획

I. 박람회 개요

- ☐ 박람회명(영문)
- ☐ 개최기간
- ☐ 장소
- ☐ 개최규모(참가업체, 참관객)
- ☐ 주요참가품목
- ☐ 주요특징
- ☐ 웹사이트

II. 참가 및 현장상담 계획

- ☐ 참가품목 선정
- ☐ 출장계획
- ☐ 부스장치 및 구성
- ☐ 홍보계획

III. 성과목표 (구체적이고 계량·비계량적인 성과지표 설정)

IV. 소요예산

[별 표 7] 개별박람회 세부참가계획(단체)

개별참가박람회 세부참가계획

업체명 : _____

I. 박람회 개요

- ☐ 박람회명(영문) / ☐ 기간 / ☐ 장소 / ☐ 주최 / ☐ 규모 /
☐ 주요참가품목 / ☐ 주요특징 / ☐ 전년도 참가실적 등

II. 전년도 참가실적 및 평가

- ☐ 참가실적 / ☐ 종합평가 / ☐ 주요품목 반응 / ☐ 개선할 점

III. 한국관 참가계획

- ☐ 참가개요 / ☐ 참가업체(품목) 선정 / ☐ 한국관 장치 및 구성
☐ 한국관 부대행사 / ☐ 홍보계획 / ☐ 참가업체 지원
☐ 성과지표

IV. 성과지표 (구체적이고 계량·비계량적인 성과지표 설정)

V. 세부 추진일정 (현지 일정 포함)

VI. 소요예산

[붙임]

1. 참가업체 현황(회원사 확인서 포함)
2. 한국관 장치 세부내역
3. 현지시장 특성 및 품목별 진출여건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현지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

[별 표 8] 개별박람회 결과보고서(일반)

개별참가박람회 결과보고서 1/3

참가업체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담당자명			부 서 명		
	연 락 처			E-mail		
	참가형태			출장인원(수)		
박 랑 회 개 요	박람회명(국문)			박람회명(영문)		
	개최기간(차수)		개최지	국가명(), 도시명()		
	주관사			홈페이지		
	개최규모	전 시 면 적	㎡ (평)			
		참가업체수		참관객수	명	
	주 전시품목			방문바이어 수	명	
참가 성과	바이어 발굴	총 ()개사	기존바이어()개사	신규바이어()개사		
	계약금액(US\$)	건 천불				
	상담금액(US\$)	건 천불				
참가 결과	전시품목	1. 2. 3. 등 총()개 품목				
	소요비용(만원)					해당 박람회를 참가하면서 발생된 총 소요비용
	출전상품의 품목별 반응	(품목명)	(바이어 등 참관객 반응)			

개별참가박람회 결과보고서 2/3

핵심 성과	○ ○ ○				
현지시장 조사결과	○ ○ ○				
기타 건의사항	○ ○ ○				
상담바이어 현황	바이어 업체명	국가	바이어명	상담 및 계약 내용	기존/신규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귀 중

개별참가박람회 결과보고서 3/3

□ 박람회 사진자료

(전시장 전경)	(박람회장 전경)
(참가업체 부스 전경)	(참가업체 전시품 현황)
(참가업체 임차비품 증빙사진)	(참가업체 바이어 상담장면)

개별참가 박람회 참가업체 설문서

우리 aT에서는 개별참가 박람회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접수하여 박람회 사업의 제도개선과 효율적 참가계획 수립에 반영코자 하니, 어떠한 의견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귀 사의 취급부류 및 수출품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부류 : _____ 품목 : _____ 외 _____ 품목)

※ 부류 예시 : 신선, 임산, 김치, 인삼, 차류, 축산, 장류, 소스, 스낵, 건강, 음료, 주류, 면류, 수산, 기타

2. 귀 사의 2021년 수출규모는 얼마입니까? (해당 괄호에 √)

가) 1백만불 이하 () 나) 1백만불 이상 () 다) 5백만불 이상 ()

라) 1천만불 이상 () 마) 5천만불 이상 () 바) 1억불 이상 ()

3. 귀 사는 aT 주최 국제식품박람회에 최근 5개년간 몇 회 참가하셨습니다? (해당 괄호에 √)

가) 참가한적 없음 () 나) 총 참가 1회 () 다) 총 참가 2~4회 ()

라) 총 참가5회 이상 () 마) 총 참가8회 이상 ()

4. 귀사에서 이번 개별참가 박람회에 참가하시면서 aT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우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불만족()

4-1. 상기 4번 문항과 같이 답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견)

5. 귀사의 차년도 박람회 참가계획 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 괄호에 √)

가) 동일 박람회 참가 () 나) 타 박람회 참가 () 다) 계획없음() 라) 미정 ()

5-1. 상기 5번 문항과 같이 답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견)

6. (개별참가 박람회) 기타 박람회의 운영이나 관리 등에 개선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 되시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별 표 9] 개별박람회 결과보고서(단체)

개별참가박람회 결과보고서

업체명 : _____

I. 박람회 개최현황

☐ 박람회 개요 / ☐ 참가현황 / ☐ 박람회장 분위기

II. 한국관 참가실적

☐ 한국관 참가개요 / ☐ 한국관 분위기 / ☐ 부스구성 및 장치

III. 한국관 참가성과

☐ 사전마케팅 활동실적 / ☐ 주요 성과 / ☐ 품목별 반응 /
☐ 업체별 참가성과 / ☐ 부대행사 결과

IV. 사후관리방안 및 개선사항

☐ 사후관리방안 / ☐ 개선사항

V. 예산집행내역

VI. 종합의견

[제출 불임자료]

1. 참가업체 바이어상담 결과 (바이어 업체명, 담당자, 바이어 현황[기존,신규] 포함)
2. 사진자료
3. 참가업체 명단 (업체명, 대표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포함)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현지 여건에 맞게 변경

[별 표 10] 박람회 표준상담(세일즈 리드) 양식

표준 상담(세일즈 리드) 양식

상담일시		상담자	
전시회명			

1. 방문 참관객 정보

성명		부서		직위	
회사명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2. 상담 제품 및 서비스

1. 관심품목	
2. 구매시기	
3. 구매예산	(현장 구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4. 구매금액	(성명, 직위, 부서)
5. 구매결정자 정보	

3. 요청사항

1. 추가상담요청	(날짜)
2. 제품소개자료요청	(날짜)
3. 내방객 언급내용	
4. 특기사항	

4. 구매력 평가

구매력	유	무	구매력 등급	A	B	C
-----	---	---	--------	---	---	---

5. 사후처리

1. 사후처리 담당자	
2. 사후처리 내용	
■ 개별접촉내용 (날짜:) ■ 제품소개자료 발송 (날짜:) ■ 기타	
3. 판매실적	
■ 품목 ■ 판매액	

[별 표 11]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성과평가 조사서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성과평가 조사서(예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를 통해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귀사의 응답은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대상전시회 선정 및 정책수립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응답자 및 응답 업체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수행 : ○○○○○○○○○○

(담당 : ○○○ ○○, Tel : 00-0000-0000, ○○○○@○○○○.○○.○○)

■ 조사주관 : ○○○○○○○○○○

(담당 : ○○○ ○○, Tel : 00-0000-0000, ○○○○@○○○○.○○.○○)

【작성일자】 202 년 ____ 월 ____ 일

【응답자 정보】

(성명) : _____ (직함 및 직책) _____

(연락처-유선) : _____ (연락처-모바일) _____

(e-mail 주소) : _____ @ _____

(우편물 수령지) :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1. 회사 기본사항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하거나 기재해 주십시오.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1) 회사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 □□ - □□□□□□
3) 업종	()
4) 제조 여부	() ① 제조 ② 비제조
5) 제품 부류 (하단 보기에서 부류 한 개를 선택 기재)	()
1. 신선 2. 임산물 3. 김치 4. 인삼	5. 차류 6. 축산물 7. 장류 8. 소스
	9. 스낵 10. 건강 11. 음료 12. 주류
	13. 면류 14. 수산물 15. 기타
6) 해외생산시설 보유 여부	() ① 보유 ② 비보유
7) 회사 정규 직원 수(202 년 현재 기준, 대표자 포함)	() 명

2. 박람회 참가 횟수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1) 20 -20 년 해외박람회 참가 횟수	총 () 회
2) 20 -20 년 「○○○ 박람회」 참가 횟수	총 () 회

3. 202 년(또는 202 년) 「OOO 박람회」 참가 전 사전 마케팅 활동에 대한 항목입니다. 전시회 참가 전 귀사가 실행한 마케팅활동에 대해 기재하여주시고, 전시회 종료 후 효과성이 높았다고 판단되는 마케팅활동 순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효과성 높은 활동 순위
1) 온라인 홍보(이메일 송부 등)	()	()
2) 오프라인 홍보(제품소개 리플렛 송부 등)	()	()
3) 전시회 참가 전 바이어 업체와 사전매칭 시도	()	()
4) 전시회 초청장 배포	()	()
5) 사전 이벤트 진행	()	()
6) 기타활동	()	()

4. 202 년(또는 202 년) 「OOO 박람회」 참가 현황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참가 규모	1) 부스 참가 규모(부스 수 기재)	() 부스
	2) 투입인력 규모(출장 인원 기준)	() 명
참가 비용	3) 박람회 참가 신청에 따른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 원
	4) 전시품 운송에 따른 운송비(포장, 운송, 통관 등)	() 원
	5) 박람회 참가 마케팅비(광고, 홍보물, 기념품, 통역, 바이어 접대비 등)	() 원
	6) 박람회 참가에 따른 출장비(항공, 숙박, 식일비 등)	() 원
	비 용 합 계	() 원

[추가 질문]

3-6)-1. (출장비를 '0'원으로 기재한 경우)

박람회 참가에 따른 출장비를 0원으로 기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① 현지 지사(법인) 직원 투입
- ② 기타 _____

3-6)-2. (박람회 개최 지역 평균 항공요금보다 기재한 출장비가 적은 경우)

해당 박람회 개최 지역 평균 최저 항공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출장비로 기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① 항공비 절감(마일리지 사용, 저가 항공 또는 경유 노선 이용 등)
- ② 숙박 및 일·식비 절감(민박 등 저렴한 숙소 이용)
- ③ 현지 지사(법인) 비용으로 처리
- ④ 출장비를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음 (지원기관명 : _____)
- ⑤ 기타 _____

5. 귀사는 「OOO 전시회」 기간 중 『표준 상담(세일즈 리드) 양식』을 작성하셨습니까? ()

- ① 작성함
- ② 작성하지 않음
- ③ 별도의 자체 상담 양식에 작성

* 표준 상담(세일즈 리드) 양식이란?

우리 회사 부스에 방문하여 상담한 참관객 정보 및 상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기재하여 구매력을 중심으로 참관객을 분류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6. 귀사의 「OOO 박람회」 참가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응답 기재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6-1. 현장 참가 성과

구 분	세부 내역	기재 방법	응답 기재
해외바이어 발굴 성과	① 바이어 접촉 명수	부스에 방문한 기존·신규 바이어와 명함 등의 연락 가능 정보를 수집한 참관객 의 총인원 수	() 명 기존()명 신규()명
현장 상담 성과	② 총 상담 건수	표준·자체 상담 양식 총 작성 건수 [주의] '① 바이어 접촉 명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건
	③ 유효상담 건수	'② 총 상담 건수' 중 상담 바이어 분류 B등급* 이상 총 건수 [주의] '② 총 상담 건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건
	④ 총 유효상담 금액	'③ 유효상담 건수'의 상담금액 총합계	() 달러
현장 계약 성과	⑤ 현장계약 건수	[주의] '② 총 상담 건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건
	⑥ 현장계약 금액	'⑤ 현장계약 건수'의 계약금액의 총합계	() 달러

* 상담 바이어 분류 등급

- **A** : 근 시일 내에 구매계획 있고 구매금액이 커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B** : 구매금액이 적거나 구매 시기까지 시간이 소요
- **C** : 즉각적인 구매계획이 없고 단순 관심 표명

[추가 질문]

6-⑥-1. (⑤ 현장계약 건수는 1건 이상을 기재했으나 ⑥ 현장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한 경우)

현장계약 건수가 1건 이상 있다고 기재했으나 현장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① 대리점 등 유통망 계약
- ② 제품의 특성상 설문 조사 시점에서 현장계약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
(제품 특성 기재 : _____)
- ③ 기타 _____

6-⑥-2. (1건당 평균 현장계약 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1건당 평균 현장 계약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현장계약 금액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샘플 판매
- ② 제품 단가 자체가 낮음
- ③ 기타 _____

※ 아래 문항은 박람회 종료 1년 후에 조사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2. (박람회 종료 1년 후 응답) 사후 참가 성과

구 분	세부 내역	기재방법	응답 기재
사후 계약 성과	⑦ 사후계약 건수	'② 총 상담 건수' 중 사후에 계약된 총 건수	() 건
	⑧ 사후계약 금액	'⑦ 사후계약 건수'의 계약금액 총합계	() 달러
총계약 성과	⑨ 총계약 건수	'⑤ 현장계약 건수'와 '⑦ 사후계약 건수'의 합계	() 건
	⑩ 총계약 금액	'⑥ 현장계약 금액'과 '⑧ 사후계약 금액'의 합계	() 달러

[추가 질문]

6-2-⑧-1. (⑦ 사후계약 건수는 1건 이상을 기재했으나 ⑧ 사후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한 경우)
사후계약 건수가 1건 이상 있다고 기재했으나 사후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대리점 등 유통망 계약
- ② 제품의 특성상 설문 조사 시점에서 사후계약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
(제품 특성 기재 : _____)
- ③ 기타 _____

6-2-⑧-2. (1건당 평균 사후계약 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1건당 평균 사후계약 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사후계약 금액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샘플 판매
- ② 제품 단가 자체가 낮음
- ③ 기타 _____

6-2-1. 금번 박람회 참가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6-2-2. 위와 같이 박람회 참가 성과 만족도를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작성하신 표준 상담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귀사에 보관하여 사후관리에 계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전년도 수출액 및 박람회로 인한 수출액 비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7-1. 귀사의 202년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억 ()만원

7-2. 귀사의 202년도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만 달러

7-3. 「OOO 박람회」참가를 통해 유발되는 귀사의 2020년 수출액은 2020년 전체 수출액의 약 몇 %로 예상하십니까? () %

8. 다음은 참가한 「OOO 박람회」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기대수준 대비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응답 기재란'에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항 목	응답 기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전시회 규모	()	①	②	③	④	⑤
2) 바이어 수(참관객 포함)	()	①	②	③	④	⑤
3) 참가기업 수준(글로벌 기업이 다수 참가)	()	①	②	③	④	⑤
4) 참관객/바이어 수준(글로벌 대형 바이어가 다수 참가)	()	①	②	③	④	⑤

8-1. 귀사의 「OOO 박람회」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8-1-1. 위와 같이 전시회 만족도를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1-2. 「OOO 박람회」참가에 대해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은 무엇입니까?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9. 귀사는 「OOO 박람회」에 재 참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는 편 ③ 보통 ④ 있는 편 ⑤ 매우 있음
⑥ 목적달성으로 인해 참가하지 않음

9-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OOO 박람회」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1.「OOO 박람회」관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를 통해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개별참가) 참가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귀사의 응답은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대상박람회 선정 및 정책수립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응답자 및 응답 업체에 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수행 : ○○○○○○○○

(담당 : ○○○ ○○, Tel : 00-0000-0000, ○○○○@○○○○.○○.○○)

■ 조사주관 : ○○○○○○○○

(담당 : ○○○ ○○, Tel : 00-0000-0000, ○○○○@○○○○.○○.○○)

[작성일시] 작성일자 : 202 년 ____ 월 ____ 일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 _____ (직책 및 부서) _____

응답자 연락처 : (유선) _____ (핸드폰) _____

E-Mail 주소 : _____ @ _____

(우편물 수령지) : _____ (시/도) _____ (구/군)

문1. 회사 기본사항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1) 회사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 □□ - □□□□□□
3) 업종	()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4. 소매업(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소매업)	9. 농업 10. 임업 11. 어업 12. 기타
4) 제조 여부	() ① 제조 ② 비제조
5) 제품 부류 (하단 보기에서 부류 한 개를 선택 기재)	()
1. 신선 2. 임산물 3. 김치 4. 인삼 5. 차류 6. 축산물 7. 장류 8. 소스	9. 스낵 10. 건강 11. 음료 12. 주류 13. 면류 14. 수산물 15. 기타
6) 해외생산시설 보유 여부	() ① 보유 ② 비보유
7) 회사 정규 직원 수(202 년 현재 기준, 대표자 포함)	() 명

문2. 박람회 참가 횟수 ('응답 기재란'에 참가 경험이 없으면 '0', 참가 경험이 있으면 총 참가 횟수 기입)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1) 20 - 20 년 해외박람회(개별박람회) 참가 횟수	총() 회 ※ 참가 경험이 없으면 '0'으로 기입
2) 20 - 20 년 지원* 「OOO 박람회」 참가 횟수	총() 회 ※ 참가 경험이 없으면 '0'으로 기입

* 올해 aT 개별참가 지원으로 참가한 전시회의 지난 3년간 참가 횟수를 의미함.

문3. 202 년 「OOO 박람회」 참가 전 사전 마케팅 활동에 대한 항목입니다. 박람회 참가 전 귀사가 실행한 마케팅활동에 대해 기재하여주시고, 박람회 종료 후 효과성이 높았다고 판단되는 마케팅활동 순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효과성 높은 활동 순위
1) 온라인 홍보(이메일 송부 등)	()	()
2) 오프라인 홍보(제품소개 리플렛 송부 등)	()	()
3) 박람회 참가 전 바이어 업체와 사전매칭 시도	()	()
4) 박람회 초청장 배포	()	()
5) 사전 이벤트 진행	()	()
6) 기타활동	()	()

문4. aT 개별참가 지원 사업으로 참가한 「OOO 박람회」의 참가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지출한 비용의 총 금액을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해 당 내 용		응 답 기 재
참가 규모	1) 부스 참가 규모(부스 수 기재)	() 부스
	2) 투입인력 규모(출장 인원 기준)	() 명
참가 비용	3) 박람회 참가 신청에 따른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 원
	4) 전시품 운송에 따른 운송비(포장, 운송, 통관 등)	() 원
	5) 박람회 참가 마케팅비(광고, 홍보물, 기념품, 통역, 바이어 접대비 등)	() 원
	6) 박람회 참가에 따른 출장비(항공, 숙박, 식일비 등)	() 원
	비 용 합 계	() 원

[추가 질문]

3-6)-1. (출장비를 '0'원으로 기재한 경우)

박람회 참가에 따른 출장비를 0원으로 기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① 현지 지사(법인) 직원 투입
- ② 기타 _____

3-6)-2. (박람회 개최 지역 평균 항공요금보다 기재한 출장비가 적은 경우)

해당 박람회 개최 지역 평균 최저 항공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출장비로 기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① 항공비 절감(마일리지 사용, 저가 항공 또는 경유 노선 이용 등)
- ② 숙박 및 일·식비 절감(민박 등 저렴한 숙소 이용)
- ③ 현지 지사(법인) 비용으로 처리
- ④ 출장비를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음 (지원기관명 : _____)
- ⑤ 기타 _____

문5. 귀사의 aT 개별참가 지원 사업으로 참가한 「OOO 박람회」의 참가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세부 내역	응답 기재	기재 방법
해외바이어 발굴 성과	① 바이어 접촉 수	() 명 기존()명 신규()명	부스에 방문한 기존·신규 바이어와 명함 등의 연락 가능 정보를 수집한 참관객 의 총 인원 수
현장 상담 성과	② 총 상담 건수	() 건	표준·자체 상담 양식 총 작성 건수 [주의] '① 바이어 발굴 건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③ 유효 상담 건수	() 건	'② 총 상담 건수' 중 상담 바이어 분류 B등급* 이상 총 건수 [주의] '② 총 상담 건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④ 총 유효 상담 금액	() 달러	'③ 유효 상담 건수'의 상담금액 총 합계 (하단 환율계산기**를 이용해 '미화(달러)'로 기입)
현장 계약 성과	⑤ 현장 계약 건수	() 건	[주의] '② 총 상담 건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⑥ 현장 계약 금액	() 달러	'⑤ 현장 계약 건수'의 계약금액의 총 합계 (하단 환율계산기**를 이용해 '미화(달러)'로 기입)

*** 상담 바이어 분류 등급**

- **A** : 근시일 내에 구매계획 있고 구매금액이 커서 즉각적인 조치 필요
- **B** : 구매금액이 적거나 구매 시기까지 시간이 소요
- **C** : 즉각적인 구매 계획 없고 단순 관심 표명

[추가 질문]

문5-1. (⑤ 현장계약 건수는 1건 이상을 기재했으나 ⑥ 현장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한 경우)

현장계약 건수가 1건 이상 있다고 기재했으나 현장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① 대리점 등 유통망 계약
- ② 제품의 특성상 설문 조사 시점에서 현장계약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
(제품 특성 기재 : _____)
- ③ 기타 _____

문5-2. (1건당 평균 현장계약 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1건당 평균 현장 계약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현장계약 금액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기타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샘플 판매
- ② 제품 단가 자체가 낮음
- ③ 기타 _____

※ 문6는 박람회 종료 1년 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문6. (박람회 종료 1년 후 응답) 사후 참가성과

구 분	세부 내역	응답기재	기재방법
사후 계약 성과	⑦ 사후 계약 건수	() 건	'② 총 상담 건수' 중 사후에 계약된 총 건수
	⑧ 사후 계약 금액	() USD	'⑦ 사후 계약 건수'의 계약금액 총 합계
총 계약 성과	⑨ 총 계약건수	() 건	'⑤ 현장 계약 건수'와 '⑦ 사후 계약 건수'의 합계
	⑩ 총 계약금액	() USD	'⑥ 현장 계약 금액'과 '⑧ 사후 계약 금액'의 합계

문6-1. 금번 박람회 참가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6-1-1. 위와 같이 박람회 참가성과 만족도를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6-2-1. (⑦ 사후 계약 건수는 1건 이상을 기재했으나 ⑦ 사후 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한 경우)

사후 계약 건수가 1건 이상 있다고 기재했으나 사후 계약 금액은 0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필요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대리점 등 유통망 계약
 ② 제품의 특성 상 설문조사 시점에서 계약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
 (제품 특성 기재 : _____)
 ③ 기타 _____

문6-2-2. (1건당 평균 사후 계약 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1건당 평균 사후 계약 금액이 1,000달러 미만으로 사후 계약 금액 기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 필요시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샘플 판매
 ② 제품 단가 자체가 낮음
 ③ 기타 _____

문7. 전년도 수출액 및 전시회로 인한 수출액 비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1. 귀 사의 202 년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문7-1-1. (매출액이 3천 만원 미만의 경우) 귀 사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창업한지 얼마 안 됨
- ② 제품 출시 전(연구 개발 단계)
- ③ 기타(기입 : _____)

문7-2. 귀 사의 202 년도 수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 달러 (예시: 10만 달러=10, 1만 달러=1 로 기재)

문7-3. 귀사의 연간 수출액 중 aT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참가한 「OOO 박람회」를 통해 유발되는 202 년 수출액은 202 년 귀사 전체 수출액의 약 몇 %로 예상하십니까? () %

문8. 다음은 aT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참가한 「OOO 박람회」에 대한 평가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기대수준 대비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 가 항 목	응답 기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전시회 규모	()	①	②	③	④	⑤
2) 바이어 수(참관객 포함)	()	①	②	③	④	⑤
3) 참가기업 수준(글로벌 기업이 다수 참가)	()	①	②	③	④	⑤
4) 참관객/바이어 수준(글로벌 대형 바이어가 다수 참가)	()	①	②	③	④	⑤

문8-1. 귀사의 aT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참가한 「OOO 박람회」 참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8-1-1. 위와 같이 박람회 만족도를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8-1-2. 「OOO 박람회」 참가에 대해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은 무엇입니까?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문9. 귀사는 aT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참가한 「OOO 박람회」에 재참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는 편 ③ 보통 ④ 있는 편 ⑤ 매우 있음
- ⑥ 목적달성으로 인해 참가하지 않음

문9-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0. 「OOO 박람회」 개별참가와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응답 기재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10-1. 귀사의 국제식품박람회 개별참가와 관련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0-1-1. 위와 같이 만족도를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1-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은 무엇입니까?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문11. 귀사의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문12.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